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¹

당사자들은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다음의 관행²은 일부 당사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는 무역구제 절차의 투명성 및 적법절차 목표를 증진할 수 있다.

정보 요청 시 미흡함에 대한 시정 또는 설명 기회

1.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에서,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정보 요청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적시 답변이 그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조사 당국은,

가. 답변을 제출한 그 이해당사자에게 미흡한 점의 본질을 알린다. 그리고

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한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이해당사자에게 미흡한 점을 시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이해당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추가 정보를 제출하고 조사 당국이 그러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그 답변이 적용 가능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 당국이 기존 및 후속 답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조사 당국은 관정 또는 그 밖의 문서에 그 답변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약속

¹ 이 부속서 및 이 부속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1994년도 GATT 제6조, 반덤핑 협정 및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합치되게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² 이 부속서에 포함된 관행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와 관련된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목록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 부속서에 그러한 절차의 특정 측면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추론도 하지 않는다.

2. 수입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수입 당사자는 자신의 당국이 가격 약속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수입 당사자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한을 포함하여, 수입 당사자에 위치한 수출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3. 반덤핑 조사에서 수입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수입 당사자는 수락된다면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를 부여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상계 관세 조사에서 수입 당사자의 조사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수입 당사자는 수락된다면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약속 제안에 관하여 수출 당사자와 그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를 부여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한다.

판정에 대한 공고 및 설명

5. 반덤핑 협정 제12.2조에 언급된 최종판정에 대한 공고가 제공될 때, 조사 당국이 중요하다 여기는 모든 사실 및 법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달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공고 또는 별도의 보고서에 포함된 그러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은 조사 당국의 조사 결과와 결론에 대한 근거도 포함한다.

6. 제5항의 목적상, 그리고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공고 또는 별도의 보고서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산정된 덤핑 마진,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산정 근거와, 모든 조정을 포함하여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 나. 덤핑수입품의 물량 및 덤핑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의 동종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가격인하의 계산에 사용된 상세한 방법,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그리고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언급된 덤핑수입품 외의 요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피해판정과 관련된 정보

7. 공고 또는 별도의 보고서는 반덤핑 협정 제12.2.2조에 언급된 수출자 및 수입자가 제시한 관련 논거 또는 주장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충분히 상세하게 규정하여, 조사 당국이 수용 또는 거부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수출자 및 수입자가 그러한 논거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당국의 처리가 조사 당국이 속한 당사자의 법과 규정 및 세계 무역기구협정에 합치하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